KOSHA GUIDE C - 52 - 2016

- (1) 비상시 근로자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계획을 수 립하고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.
- (2) 야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통신시설, 응급조치시설, 비상시 구난장비 등을 작업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여건에 따라 필요시 작업 전에 비상시 긴급안전조치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.

9.7 정전시 안전조치

- (1) 비상탈출을 위한 비상구의 이상 유무와 비상통로의 점멸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, 비상구 위치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.
- (2) 손전등, 양초 등 비상조명기구를 휴대시키거나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3) 정전에 대비한 비상연락체제를 사전에 구축하여야 한다.

10. 야간작업의 금지

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.

- (1)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
- (2) 정전이 예고된 경우
- (3) 강풍, 강우, 강설, 혹한시 옥외작업
- (4) 안전시설, 안전표지판,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한 경우
- (5) 기타 야간작업 안전·보건 조치가 미비한 경우